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4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